

인천지방법원 2018. 2. 14 선고 2017가단223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케이알앤씨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1. 24.

판결 선고2018. 2. 14.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아산시 C 전 662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8. 12. 11. 접수 제384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장민석

별지